

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방향

2015. 1. 27. / 한국콘텐츠진흥원

7 사업개요

가. 사업기간 : 2015. 01. ~ 2016. 09.

나. 사업예산 : 100억원

다. 추진방향

① 전통성, 고유성, 상징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글로벌콘텐츠로 육성

※ 글로벌(Global : Global + Local) 콘텐츠 : 지역 소재의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적 콘텐츠로 성장하여,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지닌 콘텐츠화 됨을 의미

② 글로벌콘텐츠페어 개최를 통한 지역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개척 지원

2 추진전략

지역특화콘텐츠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

목표

지역콘텐츠 육성 계획 수립

우수 지역특화문화콘텐츠 양성

국내·외 판로개척

기획

개발

사업화

- 사업목표 및 추진방안 수립
- 문화부 세부사업 추진방향 협의
- 지자체,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, 지역콘텐츠 기업 의견수렴
- 특화콘텐츠개발 희망과제 수요조사
- 지역콘텐츠기업 현황조사
- KOCCA내 타사업 연계전략 수립

- 금융투자지원
 - 쇼케이스, 투자유치, 기회제공
- 비즈니스역량강화
 - IR, 피칭 교육
- 타겟 마케팅 컨설팅
 - 소비자 성향 및 수요 조사
- 지원사업 관리교육
 - 국고집행, 정산, 보조사업시스템 활용

- 지역콘텐츠행사
 - 글로벌콘텐츠페어 개최
- 시장진출지원
 - 국내외 마켓 참가지원
- 홍보지원
 - 매체광고, 미디어 홍보
- 플랫폼 활용지원
 - 방송, 포털, 출판 등 플랫폼 사업자 연계

프로젝트 기획 컨설팅

지역콘텐츠개발 및 사업화 전과정 자문단 운영

※ 'KOCCA-지역 협력' 프로젝트 별 전담 PM 운영

추진 전략

지역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

가.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방향

-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념
 - 정의 : 지역(행정구역, 문화권)의 전통적, 역사적 고유한 창조자산 또는 지역 상징성을 소재로 지역에서 개발(제작)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문화콘텐츠
 - 장르 : 출판, 만화, 음악, 게임, 애니메이션, 방송, 캐릭터, 융합 등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콘텐츠 진흥범위 중심
 - 지원규모 : 총 19개 내외 개발 과제 지원 (8억×4개, 5억×6개, 2억×9개)
- 추진방향
 - 유·무형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활용한 지역 브랜드 개발
 - 지역의 문화·생태를 활용한 테마 콘텐츠 개발
 - 한류 확산에 잠재력을 갖춘 지역 문화 콘텐츠 개발
 - 지역에서 제작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 가능한 콘텐츠 육성
 - 세계인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관광 연계 지역 기반 문화콘텐츠 육성
 - 지역스토리랩, 지역기반CKL 발굴 아이템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콘텐츠 육성
 - 행정구역을 넘어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문화권, 역사권 중심의 광역 자치단체 간 컨소시엄 콘텐츠 육성

나. 신청방법

- 신청단위 : 전국 광역시·도 단위 지역특화 문화콘텐츠(서울 제외)
- 신청자격 :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출자·출연 지역문화산업지원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지역기업을 포함한 프로젝트 컨소시엄 단위 과제지원
- ※ 지방자치단체 관리하는 출자·출연기관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등. 단, 지역에 본 법률에 의거한 기관이 없는 경우, 지자체가 문화콘텐츠산업 책임기관으로 별도 승인한 경우는 가능

○ **컨소시엄 구성 원칙**

- (기업) ①신청지역 소재 기업은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②지역콘텐츠기업의 제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기타지역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
- (지자체) 광역자치단체간 컨소시엄 가능, 광역자치단체 內 시·군 간 협력은 컨소시엄이 아님

다. 지원범위

- (총 지원 예산 범위) 총사업비의 70%이내 개발지원. 단,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는 차등부담 함

구분	지원 상한액	지원범위	지원비율	국고지원금 대비 지방비 매칭비율	
				자립도	매칭비
글로벌프로젝트	800백만원 이내	4개 과제 내외	총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	60%초과	30% 이상
레벨업프로젝트	500백만원 이내	6개 과제 내외		40%-60%	25% 이상
스타트업프로젝트	200백만원 이내	9개 과제 내외		40%이하	20% 이상

※ 총사업비 : 국고 + 자부담 + 투자금

※ 단계별 선정 과제 중 최종 결과물이 우수한 과제는 차년도에 산출물을 달리하여 상위단계 과제에 지원 신청 할 수 있음

※ 주관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지역기업이 이행보증(지급보증)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, 국고 지원금 규모의 10% 내외에서 보증기관에 출자 가능한 예산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함 (보증기관 : 콘텐츠공제조합 등)

- (자부담 구성) 자부담은 지방비(현금)와 민간부담금으로 반드시 구성하여야 하며, 민간부담금(현금)은 국고와 지방비 합계의 10% 이상이 되어야 함

※ 단, 지방비가 전액 기초자치단체에서 현금 출자될 경우, 지방비 매칭금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[최근 3개년(2011년~2013년) 평균]에 따름

※ 재정자립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 간 컨소시엄의 경우, 재정자립도가 높은 비율로 자부담 부담

- (지역별 지원 한도액) 지역별(광역자치단체 기준) 전체 국고지원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 할 수 없음

- 광역자치단체 간 컨소시엄 프로젝트는 선정 시 초과금액 제한과 무관

마. 국고지원금 활용범위(안)

[전담 기관(한국콘텐츠진흥원)]

- 사업 수행관련 비용(심사, 연구개발, 마케팅, 전문가활용 등)

[주관 및 참여기관]

- 직접개발비, 홍보 및 마케팅비, 상품화 비용, 위탁사업비, 글로벌진출 경비
 - ※ 주관기관은 지방비(자부담)예산을 초과한 금액을 직접 사용할 수 없음
- 내부인건비
 - (주관기관) 사업관리를 위한 프로젝트 전담 매니저 인건비
 - ※ 총 지원금의 7%이내, 5천만원 한도 내 가능
 - (참여기관) 프로젝트 관련 직접 참여인원에 대한 인건비
 - ※ 내부직원 인건비(참여율 기준), 프로젝트 신규채용 인건비(6개월 이상 재직)

바. 국고지원조건(선정이후)

- 개별프로젝트 단위의 문화산업전문회사(이하 문전사)를 설립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여야 하며, 문전사의 대표는 주관기관에서 선정함
 - ※ 문전사설립 기준 : 국고 5억 이상 지원 또는 총제작비 20억 이상 과제 중 국고 2억 이상 지원 과제
- 수도권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경우, 주요 제작활동은 프로젝트 신청지역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
-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국내 참여기업이 해외기업과 컨소시엄 가능. 단, 국내기업이 프로젝트 주도적 역할 수행하여야 함
- 참여기업은 지역소재대학 및 문화산업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를 활용하여야 함

사. 추진절차

